

#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12일, 김경숙 의원 외 16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 2024년 4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경숙 의원

나. 제안이유

-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야간관광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현주)

##### 가. 제정의 필요성

-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2022년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약 1조 3,5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는 물론 약 5,309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만 5,835명의 취업유발효과, 약 9,093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관광지]밤이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는 도내 15개

야간관광 명소가 지정되어 있고, 경상북도는 야간관광상품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지만, 경상북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에 야간관광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실제적인 야간관광이 활성화 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경상북도 지역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 현황〉

지역	관광자원(가나다순)
계	15개소
포항시(3)	① 구룡포 피어라계단 미디어아트 ② 스페이스워크 ③ 포항 국제불빛축제
경주시(3)	① 대릉원 ② 동궁과 월지 ③ 월정교
김천시(2)	① 사명대사공원 ② 연화지와 황산폭포
안동시(2)	① 선유줄불놀이 ② 월영교와 문보트
문경시(3)	① 문경새재 달빛사랑여행 ② 은성탄광 달빛여행 ③ 전설의 귀신 in 문경
성주군(1)	① 성박숲
칠곡군(1)	① 가산산성야행

- 이에 경상북도의 풍부한 야간경관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콘텐츠 개발 등 관광시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하 “제정안”이라 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나. 제정안의 구성 체계

- 제정안은 본칙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음.

〈제정안의 구성 체계〉

조항	조제목	조항	조제목
제1조	목적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	정의	제8조	위원회 운영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9조	위탁
제4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부칙	시행일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 제정안 제1조부터 제정안 제3조까지는 제정안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함.
- 제정안 제4조는 도지사가 5년마다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경상북도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안정적·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가 관광진흥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 포함된 관광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제5조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시설 조성 또는 정비, 연구조사 등을 직접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제정안 제6조부터 제정안 제8조는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반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의 기능,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위한 규정으로 적절함.
- 제정안 제9조는 도지사가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으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제정안 제10조는 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광시장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임.

## 라. 종합의견

- 경상북도는 22개 시·군에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며, 기존 야간관광 관련 사업은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한 조명설치 등 하드웨어 구축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일회성 개별사업

(이벤트, 행사 등)이 많아 지속적인 성과와 상승효과 만들 수 있는 관광자원 간 연계·협력이 필요함.

- 특히,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에 야간관광에 대한 규정이 없는 여건에서 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 도내 풍부한 야간관광 자원의 체계적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제정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주요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